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69 발의연월일: 2025. 4. 3.

발 의 자: 박홍근・이수진・민병덕

박상혁 · 진성준 · 이용우

한민수 이 한기 • 박홍배

김현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며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주요 과 제로 삼아야 하나,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 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.

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 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 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 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제8 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7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,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한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이거나 임원의 임면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~ ⑦	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~ ⑦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⑧ 제7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를
	임명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
	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
	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, 근로
	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
	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
	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
	한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⑧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